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선현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62
----------	-------

발의년월일 : 2023. 8. 8.

발의자 : 선현우 의원 등 14인

1. 제안이유

- 현행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는 ‘교통안전’이라는 포괄적 개념의 제명을 채택하고 있는 상태로, 전면개정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제명으로 정비
- 자동차 정비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현행	개정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안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변경 (안 제1조)
 -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 내용 규정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 지원사업 확대 변경 (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자동차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지원

3. 전부개정조례안 : 불임 1
4. 현행조례 : 불임 2
5. 관련법령 발췌서 : 불임 3
6. 예산수반사항 : 불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불임 5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붙임 1】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정비업” 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 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선현우 의원 대표발의 (행정3569)

【붙임 2】 현행조례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2016.01.11 조례 제19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제4조(지원대상 사업) 안산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협회가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정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262
------------	-------

제안년월일 : 2023년 9월 5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수정이유

-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과 더불어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수정함.

주요골자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무상점검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안 제5조제4호)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제4호 중 “무상점검 지원” 을 “무상점검 지원 및 홍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u>무상점검 지원</u>	4. ----- ----- ----- ----- ----- - <u>무상점검 지원 및 홍보</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